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9435
등록일자	2016.3.7.
결재일자	2016.3.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여성정책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환경국장	
조경진	이기희	윤혜경	전결 03/07 이우룡	
협 조				

---

##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

---



복지환경국  
여성가족과

#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

중구 여성플라자 위탁 운영자인 (사)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지상3층, 4층 사무실을 통합하고 기존 4층 사무실을 제3강의실로 복원하는 등 여성플라자 시설물 변경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하고자 함

## I 승인 근거

- 『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6조
-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변경승인 요청의 건 (중구여성 2016-12)
- 2016년 중구 여성플라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(여성가족과-3215)

## II 시설물 변경 개요

- 위 치 : 중구 다산로32길 5 지상3층 ~ 지상6층
- 변경 세부 내용

구분	위치	변경 내용
시설 변경	지상3층	여성플라자 사무실, 경력개발실, 뷰티아카데미실 사이 가벽 철거 ⇒ 여성플라자·새일센터 사무실 통합 운영
	지상4층	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⇒ 제3강의실로 복원
기타 시설물 설치 등	지상4층	다용도실 외벽에 여단이문 설치
	지상5층	바리스타실 유리문 철거 ⇒ 잡카페 측면으로 유리문 이동

※ 건물 가벽 철거 및 출입문 등 기타 시설물 설치 사항으로 건축과 협의 대상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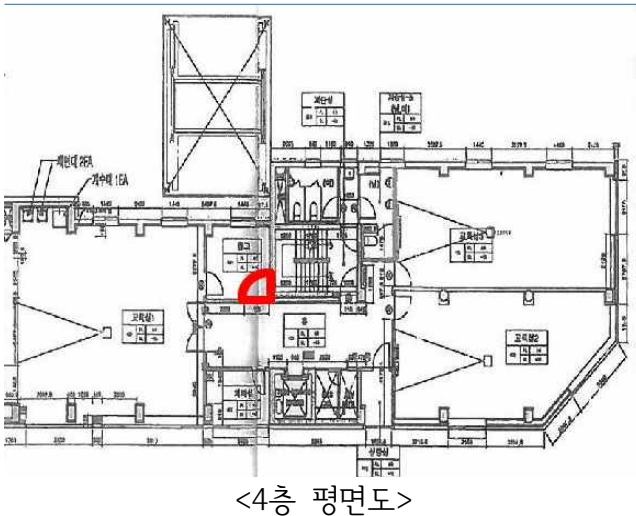
※ 건축물대장상 지상3층~지상6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불필요



<3층 평면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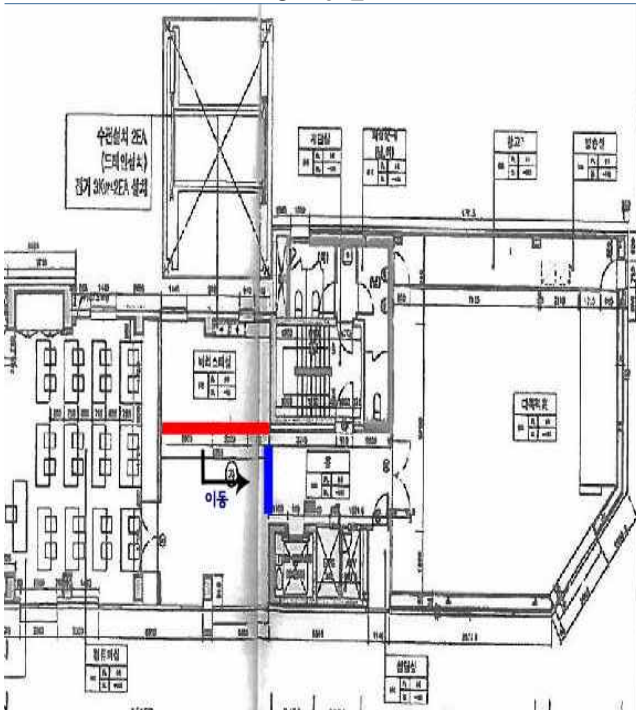
<통합사무실 공간>



<4층 평면도>



<여닫이문 설치 공간>



<5층 평면도>



— 철거



— 유리문 설치

<유리문 설치 공간>

- 변경 사유 : 여성플라자-새일센터 사무실 통합 운영 및 강의실 복원
- 소요예산 : 20,000천원  
[중구 여성플라자 예산 > 재산조성비 > 시설비 > 시설변경비]

### III 시설 변경 승인

- 승인 사항
  - 【 중구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 】
    - 다음과 같은 이유로 「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의거 중구 여성플라자의 시설 변경 요청을 승인함.
  - 【 승인 이유 】
    - 여성플라자-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통합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
    - 제3강의실 복원으로 교육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성 증대
- 승인일 : 2016. 3. 7.(월)

### IV 향후 계획

- 여성플라자 시설 변경 승인 통보 : 2016. 3. 7.(월)
- 추진 일정
  - 2016. 3. 7.~ 3. 25. : 공사 발주 및 실시
  - 2016. 4월~ : 통합사무실 및 제3강의실 운영